



석박사 통합과정 안내

■ 학위취득요건

- (1) 6학기 이상 등록
- (2) 전공필수과목 이수, 통산 6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이수, 전 과목 평점평균 3.0이상
- (3) 「대학원논문연구」 교과목 최소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 (4) 세미나 출석요건 충족 (☞ 교과과정 3.세미나 출석요건 참고)
- (5)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6) 학위논문심사 통과. 단, 기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학기에 연구생 등록

■ 소요학기

- 1) 박사학위(이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 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학위취득 요건의 (1), (2), (3)을 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하지 아니하고 정규학기(8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기말에 '수료유예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2)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6개 학기 연속휴학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교과과정

1. 소요학점

- 1)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이다. D-(0.7) 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과 S등급을 받은 대학원논문연구 또는 세미나 과목에 한하여 이수 교과학점으로 계산된다.
- 2)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경제학부의 대학원 교과목은 6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교과구분이 '대학원'인 B+학점 이상 과목에 한하며, 학사과정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함.)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은 최초 등록 학기 초에 즉시 해야 한다.
- 3) 본교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타교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동일 학과·전공 교과목(성적 B0 이상인 학점)은 15학점까지 지도교수 추천 및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못할 수 있음.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본부규정)

2. 교과목 이수방법 안내

- 1) 매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이다. 단, 교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9학점 이내의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공필수과목(6개 과목)은 아래와 같다.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경제통계학연구 (석사과정 전필과목)
고급미시경제학연구, 고급거시경제학연구, 계량경제학연구 (박사과정 전필과목)
- 3) 대학원논문연구 과목과 세미나 과목은 매 학기당 각각 1강좌씩 수강가능하며 수료시까지 대학원논문연구는 9학점, 세미나 과목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은 필수적으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4) 타 학과의 교과목을 경제학부의 교과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담당 부학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 없이 수강한 타 학과 교과목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 학기 초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학과사무실에서 신청한다.

승인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수학, 통계학 관련 타 학과(부)의 학부 및 대학원, 경영대 대학원 개설과목이다. 기타 교과목을 승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신청 시 강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총 18학점(학기당 6학점까지 가능)으로 학부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본교 경제학부 학부과목은 승인받을 수 없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한해 총 6학점 범위 내에서 경제학부 학부과목 승인신청을 허용한다.

3. 세미나출석요건

- 1)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BK21/김태성 기념 세미나, 경제사 워크숍,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 요건은 2013학년도 석박사 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 2)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매 학기 초에 세미나 담당 조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세미나 참석 시 담당 조교에게 참석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3) 출석요건은 세미나 참석일수를 합산하여 한 학기에 6회 이상, 또는 두 학기에 걸쳐 10회 이상의 출석이다. 두 학기를 초과하여 세미나출석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할 경우 12회 이상 출석이 요구된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1. 응시자격

본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응시과목

구분	세부과목명	
외국어시험	영어	
종합시험	기초공통 과목	고급미시경제학연구
		고급거시경제학연구
	전공과목	전공필드 1과목*

※ 전공필드 :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산업연관론,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화폐금융론, 정치경제학,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경제학설사, 기업조직 및 성장론, 한국경제사,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해외출장 중일 경우 출제 및 채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 할 수 있다.

3. 응시일정

매년 3월과 9월 중순경 2회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이 있다. 매 학기 초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4. 합격요건

• 영 어

본교(학부, 대학원)에 입학 시 및 재학 시 TEPS·TOEFL시험을 치렀거나 별도의 TEPS·TOEFL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합격인정 된다. 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 초, 2학기 10월초)까지 TEPS·TOEFL에 응시하여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 종합시험

각 과목시험에 응시하여 70점(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합격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기초공통과목의 경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은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 절차

1. 학위논문 제출자격

위의 학위취득요건의 (1)~(5)항을 학위논문 제출학기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경우

2. 학위논문 제출시한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학위논문제출연장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12학기 째 6월 또는 12월에 소정의 양식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 2년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박사학위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일정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학부사무실로 소정양식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단, 승인 후 2년 이내 학점이수와 논문 제출을 모두 마쳐야 하며, 2년이 지나면 논문제출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다.)

3. 학위논문 제출절차

1) 지도교수선정

-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희망학기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함)
- (2)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에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 이후에 소속대학장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3) 강의연구지원추천교수와 논문지도교수는 일치해야 한다.

2) 논문연구결과 발표 (PROPOSAL 발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논문지도교수가 주재하는 발표회에서 2개 학기에 걸쳐 2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1개 학기에 2회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참고사항**

- 논문지도교수의 주재 하에 발표회의 일정이나 형식, 심사위원의 참석인원을 결정한다.
- 발표회의 시기는 박사 논문심사 등록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하다.
-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 또는 심사위원만 참석하는 형식 등 선택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등록

학위취득 희망학기의 학기 초(매년 4월초, 10월초)에 소정의 등록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고 논문 심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다. 수료생의 경우, 논문심사를 원하는 학기에 반드시 연구생등록을 해야 한다.

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회는 교외의 전문가 2인(교내교수 1인 포함 가능) 이상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위원들 중 선정되며, 지도교수와 교외 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참고사항 [심사위원의 자격]**

-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 타교교원 : 조교수 이상
 -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 기타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추천사유서 양식 첨부해야 함)

5) 논문심사 진행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예비심사 2회 이상 실시하고,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최종심사는 1학기의 경우 6월 하순, 2학기의 경우 12월 하순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6) 논문심사연장 및 철회

논문심사결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심사를 한 학기동안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 5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는 소정의 연장신청서를 제출) 다음 학기에 논문을 보완하여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심사 철회원을 제출 할 수 있다.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심사 횟수는 총 5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논문심사 등록 이전 : 논문지도교수가 주재하는 발표회 2회
- 논문심사 등록 후 : 예비심사 2회 이상, 최종심사 1회

7) 학위논문 PDF원문 파일 및 보존용 논문제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인준지’를 작성, 심사위원분들께 최종인준(날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용 논문 제출 시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존용 논문을 제출해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7월말, 1월말)내에 반드시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용 논문의 제목 및 내용은 최종심사통과논문과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자 조치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에게는 석사학위 수여요건 충족 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학위과정 참조)